

□ **목 ·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도	집행방법
<b>인건비 (110)</b> <b>※ 해당 없음</b>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b>운영비 (210)</b>	<b>일반수용비 (01)</b>	1. <b>사무용품 구입비</b>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b>인쇄비 및 유인비</b>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b>안내·홍보물 등 제작비</b>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자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b>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b>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b>공고료 및 광고료</b>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산·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카드사용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카드사용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카드사용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카드사용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계좌이체
	위탁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계좌이체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카드사용/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중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카드사용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계좌이체
	월정직책급 (02)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	세목	용도	집행방법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계좌이체
민간이전 (320)	민간경상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계좌이체 (민간이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민간자본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출연금 (350)	출연금 (01)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계좌이체
토지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건설비 (420)	기본조사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도	집행방법
건설비 (420)	시설비 (03)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카드사용/계좌이체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카드사용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li> <li>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li> <li>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li> <li>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li> <li>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li> <li>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li> </ol>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li> <li>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li> <li>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li> <li>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li> <li>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li> <li>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li> </ol>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li> <li>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li> </ol>	
	차입금이자 (0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li> <li>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li> <li>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li> <li>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li> <li>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li> </ol>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립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 |                     |                |                 |
|---------------------|----------------|-----------------|
| 1. 주류판매(유통)         | 2. 상품권판매       | 3. 복권판매         |
| 4. 레저 스포츠           | 5. 운동경기, 레저용품  | 6. 극장식당         |
| 7. 산후조리원            | 8. 총포류 판매      | 9. 남·여 기성복      |
| 10. 양품점             | 11. 골동품, 예술품   | 12. 학습지         |
| 13. 회원제             | 14. 방문판매       | 15. 다단계판매       |
| 16. 화랑, 표구사         |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
| 22. 불링장             | 23. 스키장        | 24. 수영장         |
|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 26. 악세사리       |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
| 28. 수제용품점           | 29. 예식장        | 30. 결혼(가례)서비스   |
| 31. 혼수전문점           | 32. 장의사        | 33. 이벤트         |
| 34. 상담실(결혼 등)       | 35. 장례식장       | 36. 묘지(납골공원 등)  |
| 37. 레포츠(스포츠)클럽      | 38. 온천장        | 39. 화방          |
| 40. 공연장, 극장         | 41. 운동경기관람     | 42. 유선TV        |
| 43. 주차장             | 44. 피아노 대리점    | 45. PC 게임방      |
| 46. 종교상품점           | 47. 피부미용실      | 48. 자석요         |
| 49. 악기              | 50. 스포츠마사지     | 51. 체형관리        |
| 52. 대중목욕탕           | 53. 학교등록금      | 54. 유치원         |
| 55. 종교단체            | 56. 무속, 철학관    | 57. 메리야쓰        |
| 58. 아동복             |                |                 |

## □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p>1. 보조금을 교부받은 <b>민간단체</b>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b>횡령</b></p> <p>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p> <p>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p>	<p>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p> <p>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p>
<p>2. 보조금을 교부받은 <b>민간단체의 임직원</b>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b>횡령</b></p> <p>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p> <p>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p>	<p>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p> <p>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p>
<p>3. 보조금을 교부받은 <b>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b>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b>유용</b></p>	<p><b>제1호 및 제2호</b>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b>준용</b>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p>
<p>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p>	<p>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p>
<p>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p>	<p>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p>
<p>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서 제출한 경우</p>	<p>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p>
<p>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p> <p>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p> <p>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p> <p>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p>	<p>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p>

### < 비 고 >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함.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최대)
외부강사	특별강사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원, 국무위원(급), 대법관, 대학총장</li> <li>- 방송매체 메인 MC, 중앙일간지 고정 칼럼 기고자</li> <li>- 유명 예체능인, 인간문화재</li> <li>-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의 기업 대표</li> <li>-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의 연구소·센터 대표</li> <li>- 문물관장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 자격 있는 해당 분야 권위자</li> </ul>	최초 1시간	50만원
			초과 시간당	20만원
	특별강사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관(급), 대학부총장(급), 법원장(급)</li> <li>-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 정교수, 명예교수</li> <li>-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연구기관장</li> <li>- 저명 방송·언론·문화·예술·종교인</li> <li>- 상시고용인원 200인 미만의 기업 대표</li> <li>-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연구소·센터 대표</li> <li>- 문물관장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 자격 있는 해당 분야 권위자</li> </ul>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시간당	20만원
	일반강사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공무원(상당)에 속하는 공무원(실·국·본부장급)</li> <li>-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li> <li>- 10년 이상의 경력의 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연구기관 연구원</li> <li>- 사회 주요단체 강의 전문가 또는 방송·문화·예술·종교인</li> <li>- 대기업 이사급 이상</li> <li>- 상시고용인원 50인 미만의 연구소·센터 등 대표</li> <li>- 문물관장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 자격 있는 해당 분야 권위자</li> </ul>	최초 1시간	20만원
			초과 시간당	10만원
	일반강사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급 상당 공무원</li> <li>- 일반강사(I) 이외의 외부강사</li> </ul>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시간당	7만원
	보조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사의 교육진행에 보조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자 (단, 강의매체의 조작은 불인정)</li> </ul>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시간당	3만원
내부강사		해당 없음 (사업을 수행하는 문물관 소속의 근로자를 내부 강사로 재고용 불가)		

< 비 고 >

- ※ 상기 내용은 대검찰청예규 제770호 “강사료 지급 규정” 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 강령의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을 준용하였음.
- ※ 토론비, 사회비, 공연비, 출연료, 행사진행 수당 등은 상기의 대상 및 기준을 참조하여 지급 가능.
- ※ 지급 대상이나 기준이 불확실할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